حكومة دبي
GOVERNMENT OF DUBAI

بلدية دبي
Dubai Municipality

보건안전부

(제품관리과)

문서 제목	**소비자 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 지침** **국가 간 화물 관리 및 수입 절차**
문서 코드	DM-HSD-GU18-ECOM2
버전 #	V 3.0
발행일	2026년 9월 16일
이전 발행일	2024년 5월 14일

문서 이력 로그

본 문서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문서 관리에 관한
기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어야 한다.

버전 #	날짜	작성/검토	변경사항 요약
1	2022년 12월 20일	제품관리과	발행 – 버전 1
2	2024년 5월 14일	제품관리과	• 두바이 정부 및 두바이 시청 신규 로그 추가 • 화물 서비스 이메일 업데이트 (18 페이지)
3	2024년 5월 14일	제품관리과	• 법적 근거 갱신

목차

1 도입 5

2 목적 5

3 정의 6

4 적용 범위 7

5 제품 정의 및 분류 7

5-1 화장품, 퍼스널케어제품 7

5-2 향료 8

5-3 세제 및 살생물제 9

5-4 건강보충제 9

5-5 식품 접촉 재료(FCM) 10

5-6 장난감 11

6 몬타지(Montaji) 시스템 도입 11

7 서비스 전제 조건 12

8 몬타지를 통한 회사 등록 12

8-1 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 12

9 소비자 제품 등록(CPRE) 12

9-1 필수 서류 12

10 통관 절차 13

10-1 전제 조건 13

11 기업-소비자 간(B2C) 수입 절차 13

11-1 전 세계 나머지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로의 수입 14

11-2 통관에 필요한 서류 14

11-3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의 수입(최종 소비자에게 배송) 14

12 기업-기업 간(B2B) 수입 절차 15

13 서비스 수수료 15

14 서비스 수수료 15

15 위반 및 벌금 16

16 이용 약관 16

17 이용 약관 17

1 도입

본 지침은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온라인 기업-소비자 간(B2C) 및 기업-기업 간(B2B) 화물 거래에 대한 절차 및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바이 토후국의 공중보건에 관한 2025년 법률 제5호 및 두바이 토후국의 공공안전에 관한 2026년 법률 제2호에 따라, 두바이 시청 보건안전부는 소비자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규제하며, 해당 제품을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두바이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은 두바이에 위치한 창고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든, 제삼국에서 직접 배송되든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제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두바이 에미리트(자유무역지대 포함)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UAE에 출시된 소비자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제품 출시를 책임지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인 또는 관련 시설이나 개인은 제품의 제시 방식, 라벨링, 제품 효능·효과 주장, 사용 지침 및 기타 지침 또는 제품 정보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지침의 정보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본 지침에 대한 새로운 사항, 추가 사항 또는 수정 사항은 두바이시 웹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을 참조한다.

2 목적

- 본 지침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시설의 소비자 제품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이다.
- 소비자 제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설이 공중보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정의

정의	의미
수입업자 코드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위해 회사에 발급하는 코드. 이 코드는 두바이 세관이 무역 허가에 물품 수출입이 허용된 수입업자에게 발급하는 ID이다.
허가 발급 당국	국내법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UAE의 국가기관이다.
소비자 제품	주로 보건안전부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 활동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시설	전자상거래 시설은 소비자 제품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외국 회사, 개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무실,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재고 기반 모델이든, 마켓플레이스 모델이든 또는 둘 다이든 관계없이 전자 서비스 제공자, 파트너십 또는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대리인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대신하여 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자.
라벨	화장품의 용기에 기재, 인쇄, 스텐실, 표시, 양각, 음각 또는 부착된 태그, 브랜드, 마크, 그림 또는 기타 설명 자료.
제품 효능·효과 주장	제품의 원산지, 영양 또는 건강 특성, 성질, 생산, 가공, 성분, 용도 또는 기타 품질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정 특성을 명시, 제안 또는 암시하는 표현(그림, 그래픽 또는 기호 표시 등).
의학적 주장	제품 또는 그 성분이 질병이나 그 증상을 예방, 치료, 진단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
변형 제품	성분이 유사하고 용도가 동일하지만 크기, 색상, 향료 또는 향미제를 다르게 적용하여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다양한 소비자 제품의 품목.

4 적용 범위

규제 대상 소비자 제품 범주는 다음과 같다.

-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제품
- 향료
- 세제
- 살생물제
- 건강보충제
- 식품 접촉 재료
- 장난감

5 제품 정의 및 분류

5-1 화장품, 퍼스널케어제품

- 전적으로 또는 주로 외부 인체 부위(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 조직을 청결하게 하거나 향을 내거나 외양을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거나 보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신체 부위와 접촉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조제물로 정의된다.
- 제품 유형(완전하지 않은 예시 목록):
 - 피부(손, 얼굴, 발 등)용 크림, 에멀전, 로션, 젤 및 오일
 - 페이스 마스크
 - 색조 베이스(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 메이크업 파우더, 애프터 배스 파우더, 위생 파우더 등
 - 화장 비누, 탈취 비누 등
 - 목욕 및 샤워용 조제물(염류, 거품제, 오일, 젤 등)
 - 제모제
 - 데오도런트 및 발한억제제
 - 모발 관리 제품
 - 헤어틴트 및 탈색제
 - 웨이빙, 스트레이트닝 또는 픽싱용 제품

- 세팅 제품
- 클렌징 제품(로션, 파우더, 샴푸)
- 컨디셔닝 제품(로션, 크림, 오일)
- 헤어드레싱 제품(로션, 래커, 브릴리언틴)
- 면도용 제품(크림, 거품제, 로션 등)
- 얼굴 및 눈 메이크업 제품과 메이크업 제거 제품
- 입술 및 눈가에 바르는 제품
-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 네일 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제품)
- 외부 생식기 위생용 제품
- 선탠용 제품
- 선탠 유사 효과 제품
- 피부 미백 제품
- 주름 방지 제품
- 신체/얼굴용 물티슈

5-2 향료

- 향료 제품은 에센셜 오일, 안정제, 알코올, 물, 허용된 색소, 산화방지제 및 용제로 구성된, 기분 좋은 향을 내는 모든 제품으로 정의된다.
- 제품 유형(완전하지 않은 예시 목록):
 - 오드퍼퓸(EDP)
 - 오드뚜왈렛(EDT)
 - 코롱
 - 스플래시 – 바디미스트
 - 애프터쉐이브
 - 농축 오일
 - 방향제/홈 프래그런스
 - 디퓨저
 - 향초

5-3 세제 및 살생물제

- 세제: 세척 및 세탁을 위해 비누 및/또는 표면장력계수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 또는 제제. 다양한 형태(액체, 분말, 페이스트, 바, 케이크 등)로 존재할 수 있고 가정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살생물제: 하나 이상의 활성성분을 함유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수단을 통해 유해 생물을 파괴, 억제하거나 무해하게 만들거나 이러한 생물의 작용을 막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제제이다. 여기에는 소독제와 방부제가 포함된다.

- 제품 유형(완전하지 않은 예시 목록):
 - 세탁 세제 및 섬유 세제
 - 표백 및 탈색 화학물질
 - 배수구 및 강력 세척제
 - 유리 및 표면 세척제
 - 다목적 세척제 및 주방 세제
 - 식품 접촉 세척용 화학물질
 - 얼룩 제거제
 - 세차 제품
 - 손 소독제 및 향균 퍼스널케어제품
 - 다목적 소독제 및 살균액
 - 방충제
 - 농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제 및 항균 위생 제품
 - 분수대 물 소독제
 - 수영장 물 소독제
 -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단단한 표면 소독제
 - 채소 및 과일 소독 제품
 - 식품 가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독 제품

5-4 건강보충제

-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영양가를 추가하도록 의도된 식이 성분을 함유한 섭취용 제품이다.

- 일반적인 식품 또는 식사나 식이요법의 단독 품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질병이나 질환의 예방, 치료, 치유 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제, 캡슐, 분말, 액체, 에너지 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 제품 유형(완전하지 않은 예시 목록):
 - 비타민
 - 미네랄
 - 효소
 - 단백질 및 아미노산
 - 필수 지방산
 - 허브 및 식물성 보충제
 - 프로바이오틱스
 - 식이섬유 및 프리바이오틱스
 - 보디빌딩 보충제
 - 체중 관리 제품

5-5 식품 접촉 재료(FCM)

-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조리 및 서빙 또는 최종 섭취 전에 완성된 상태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이미 식품과 접촉하고 있는, 정상적인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식품과 접촉하거나 그 구성성분이 식품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재료 및 물품이 포함된다.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이 모두 포함된다.

- 제품 유형(완전하지 않은 예시 목록):
 - 플라스틱 식품 포장 및 용기
 - 플라스틱 식기류 및 주방용품
 - 식수병
 - 플라스틱 포크, 숟가락, 나이프
 - 셀룰러 플라스틱 접시, 식기 및 컵
 - 플라스틱 젖병
 - 차 또는 커피용 보온병
 - 진공 플라스크 및 기타 진공 용기

- 현재 식품 접촉 재료(FCM) 관련 서비스는 스마트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관항(입항항)에 위치한 보건안전부 사무소 접수 창구에서 직접 제공된다.

5-6 장난감

-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인 사용 기간을 고려하고, 어린이의 행동을 감안하여 장난감이 의도된 방식 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14세 미만 어린이의 놀이용으로 설계되었거나 의도된 제품 또는 재료.
- 제품 유형(완전하지 않은 예시 목록):
 - 기능성 장난감
 - 수상 장난감
 - 활동 장난감
 - 화학 장난감
 - 장난감 화장품
 - 미각 게임
 - 후각 보드 게임
- 현재 장난감 관련 서비스는 스마트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관항에 위치한 보건안전부 사무소 접수 창구에서 직접 제공된다.

6 몬타지(Montaji) 시스템 도입

- 몬타지(Montaji)는 두바이시에서 개발한 소비자 제품용 통합 스마트 플랫폼이며, 소비자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원활한 스마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용자가 제품 등록, 화물 수출입, 제품 등재, 광고 허가, 자유판매증명서 및 등록증명서 발급,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의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몬타지 스마트 플랫폼은 두바이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관련 스마트 창구와 함께 수입업자 및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최신 소비자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7 서비스 전제 조건

- 회사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두바이 관할당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허가(소비자 제품 관련 활동에 대한 전자상거래 허가 포함)
 - 두바이 무역 포털(http://www.dubaitrade.ae)을 통해 확인 가능한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
 - 두바이(자유무역지대) 내 지정 창고
 - 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포털

8 몬타지를 통한 회사 등록

회사 등록 절차는 몬타지 포털(https://montaji.dm.gov.ae)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8-1 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유효한 전자상거래 무역 허가증

9 소비자 제품 등록(CPRE)

9-1 필수 서류

소비자 제품군	필수 서류
화장품, 퍼스널케어제품 및 향료 제품	• 제품 아트워크/모든 면 이미지 • 다음 중 하나: - 관련 인증기관/지정기관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 제조업자가 발행한 제품 구성 및 성분 농도 보고서 - 두바이시 승인 시험소의 시험 결과 보고서 • 기타 서류(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할랄 인증서
건강보충제	• 제품 아트워크/이미지 • 승인된 출처 또는 성분 보고서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 두바이시 승인 시험소의 시험 보고서

	• 기타 서류(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할랄 인증서
세제 및 살생물제	• 제품 아트워크/이미지 • 승인된 출처에서 발급한 제품 적합성 인증서 • 기타 서류(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 접촉 재료	• 승인된 출처에서 발급한 제품 적합성 인증서 •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한 물질 용출 시험 보고서 (OML/SML)
장난감	• 제품 아트워크/이미지 •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EN 71 인증서 또는 시험소 안전성 보고서

10 통관 절차

10-1 전제 조건

- 모든 수입산 소비자 제품은 현지 시장으로 수입되기 전에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수입산 소비자 제품은 반입 시점에 유통기한이 최소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품 라벨의 정보는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라벨은 쉽게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각 제품 유형별 라벨 요구사항 및 지침을 참조한다.
- 운송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비고: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고 현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소비자 제품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11 기업-소비자 간(B2C) 수입 절차

전자상거래 산업 B2C 출하량을 고려할 때, 화물은 혼재 화물로 자유무역지대에 도착하는 즉시 몬타지 수입 재수출 서비스(CPIP)를 통해 화물을 검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11-1 전 세계 나머지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로의 수입

- 소비자 제품 화물이 통관항에 도착하면 수입 회사는 DM 웹사이트 (https://montaji.dm.gov.ae)에 로그인하여 회사의 FZA 창고로 소비자 제품 화물을 반출하기 위한 허가를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CPIP 참조 번호를 받아야 한다.
 요청서에 다음 화물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화물의 목적
 - 운송 방식(항공, 해상 또는 육상)
 - 통관항
 - 컨테이너 종류(FCL/LCL)
 - 컨테이너 번호: FCL의 경우
 - 세관 수입신고서 및 날짜
 - 운송 서류(항공화물운송장/선하증권) 번호 및 날짜
 - 도착 날짜
 - 원산지
 - 포장명세서 세부정보(품목 수, 수량 및 중량)
- 고객은 필요한 화물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 요청이 처리되면, 통관항 또는 회사 창고에서 화물 검사를 준비하라는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어야 한다.

11-2 통관에 필요한 서류

- 몬타지 수입 요청 참조번호(CPIP) 또는 신청서 사본
- 세관 수입신고서(검사 시 신고가 필요하지만 BOE 사본은 필요하지 않음)
- 항공화물운송장/선하증권
- 포장명세서
- EN 71 인증서 또는 시험소 안전 보고서(장난감 제품에만 해당)
- 물질 용출 시험 보고서(OML/SML)(식품 접촉 재료에만 해당)
- 기타 서류(필요한 경우)(예: 시험소 시험 보고서)

11-3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의 수입(최종 소비자에게 배송)

B2C 화물은 게이트 패스 신청 시 혼재 화물에 대한 최초 수입 허가를 기반으로 두바이시에서 자동 승인된다.

12 기업-기업 간(B2B) 수입 절차

B2B를 위한 모든 소비자 제품 화물은 몬타지 수입 재수출 서비스(CPIP)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본토에 있는 수입 회사는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소비자 제품 화물 검사 절차 지침 참조).

13 서비스 수수료

- 소비자 제품 등록을 위한 처리 수수료는 제품당(및 변형 제품이 있는 경우 변형 제품당) 10 AED이다.
- 소비자 제품 화물의 반출 요청을 위한 처리 수수료는 컨테이너당 50 AED이다.
- 신청서가 제출되고 결제가 확인된 후 납부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비고:

-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의 B2C 수입(최종 소비자에게 배송)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수수료가 50 AED를 초과하는 경우, 혁신 수수료 10 AED와 지식 수수료 10 AED가 부과된다.

14 서비스 수수료

- 소비자 제품의 보관 및 운송은 소비자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방사능 포함) 및 물리적 오염뿐만 아니라 소비자 제품 및 용기의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소비자 제품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고 제작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소비자 제품이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 상대 습도 및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SOP를 통해 우수 창고저장 및 보관 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 입고
 - 보관
 - 세척
 - 온도/습도 모니터링
 - 손상/유통기한 만료 제품
 - FEFO/재고 순환

- 추적성

15 위반 및 벌금

번호	위반	벌금
1	서류 및 인증서 요구사항 미준수(화물 서류/COO/MSDS/유기농/GMO /EN 71/ESMA/시험소 시험/건강 증명서, 반출 증명서 등)	인증서당 500 AED
2	할랄 인증서 미비	1,000 AED
3	소비자 제품 운송 규정 미준수	500 AED
4	검사관의 검사 완료 불허	3,000 AED
5	미등록/변질/유통기한 만료/오염된 소비자 제품 수입	제품당 1,000 AED
6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허가 수입 화물 폐기	10,000 AED
7	인체 섭취에 부적합한 무허가 수입 화물 폐기	제품당 1,000 AED
8	신고되지 않은 품목 수입	2,000 AED
9	부서 지시 미준수	2,000 AED
10	요청된 날짜에 검사 준비 미완료	2,000 AED
11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무허가 수입 화물 폐기	3,000 AED
12	부적합한 무허가 수입 화물 폐기	10,000 AED

16 이용 약관

- 회사는 수입산 소비자 제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회사는 모든 소비자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몬타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는 화물 반출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게이트 패스 및 인도 안내서를 비롯한 필수 서류와 함께 각 화물에 대한 반출 신청서를 몬타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화물 포장명세서는 각 제품의 종류, 수량, 원산지, 중량 및 등록 참조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 회사는 소비자 제품의 변경사항, 제품으로 인한 손상, 제조 결함 또는 리콜 보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두바이시에 보고해야 한다.
- 두바이시는 회사 창고 또는 세관 검사 장소에서 화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소 시험을 위해 소비자 제품의 샘플을 채취한다.
- 회사가 위에 명시된 요구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두바이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출 허가가 취소된다.

17 이용 약관

(제안, 의견 및 불만사항)	추가 정보
▪ 두바이 정부와 고객을 연결하는 통합 인터랙티브 플랫폼: 04 플랫폼 https://04.gov.ae/ ▪ ✆두바이시 - 콜센터(24/7): 800900	▪ ✉ hsconsignment@dm.gov.ae ▪ 두바이 공항 화물 단지: (주소) Emirates Sky Cargo Building, Office No 1057 - 044340 283 제벨 알리 항구: (주소) Gate No 7, Customs Building - 04 887 0601 ▪ ✆ 두바이시 – 콜센터(24/7): 800900